2026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엠북 건축/지적

공부혁명!
mbook.kr

- 스마트폰 수험총서
- 법, 시행령, 시행규칙 종합 정리
- 최근 법령 신설 및 개정 내용 반영
- 54분 완성

도서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ISBN : 979-11-7393-231-1

발간일 : 2026-04-13

형식 : 스마트폰용 전자책(PDF)

저자 : 엠북

출판사 : 엠북

홈페이지 : https://www.mbook.kr/

이메일 : by4782@gmail.com

정가 : 7,500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이하 법)

[목차]

제1장 총칙(p5)

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p8)

제3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p23)

제4장 열사용기자재의 관리(p65)

제5장 시공업자단체(p76)

제6장 한국에너지공단(p78)

제7장 보칙(p87)

제8장 벌칙(p93~99)

[약어]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부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산업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

국토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공단은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

국가등은 국가, 지자체

다소비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

[비고]

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

검은색은 법

보라색은 시행령

갈색은 시행규칙

붉은색은 시행 예정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1장 총칙

1~3조

1. 목적

- 에너지 수급 안정
- 에너지의 합리적, 효율적 이용 증진
- 에너지소비 인한 환경피해 줄임
-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국민복지 증진, 지구온난화 최소화에 이바지

2. 정의

가. 에너지경영시스템는 에너지 사용자나 공급자가 에너지이용효율을 개선할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계적,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활동체제

나. 에너지관리시스템은 에너지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센서/계측장비, 분석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하고 에너지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에너지사용을 제어하는 통합관리시스템

다. 에너지진단은 에너지 사용/공급 시설에 대한 에너지 이용실태, 손실요인 등을 파악해 에너지이용효율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모든 행위

라. 이외 에너지법 따름

3. 정부와 에너지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가) 정부는 에너지 수급안정과 합리적,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 종합적 시책 강구/시행

나)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국가에너지정책의 효과적 수행과 지역경제

발전 도모를 위한 지역에너지시책 강구/시행

다) 에너지사용자와 공급자는 국가등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 에너지 생산, 전환, 수송, 저장, 이용 등에서 효율 극대화, 온실가스 배출 감소 노력

라)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는 기자재와 설비의 에너지효율 증가, 온실가스 배출 감소 기술 개발, 도입 노력

마) 모든 국민은 일상 생활에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 노력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

4~14조

1.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가. 장관은

-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수립 요
- 수립시 관계 행정기관 장과 협의 후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의 거침
- 관계 행정기관 장에 자료 요청 가능

나. 내용

1)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 전환

2) 에너지이용효율 증대

3)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 기술개발

- 홍보/교육

- 가격예시제 시행

4) 에너지원간 대체

5) 열사용기자재 안전관리

6)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 대책

7) 이외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

2.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가) 관계 행정기관 장과 시도지사(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시행 요

- 장관에 실시계획과 시행 결과 제출

나) 장관은 위원회 심의 거쳐 제출된 계획 종합/조정, 추진상황 점검/평가

- 평가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관계 연구기관 등에 업무 대행하게 함

3. 장관, 산업장관의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가. 국내외 에너지사정 변동에 따른 에너지 수급차질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의 주요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에 에너지저장시설 보유, 에너지 저장 의무 부과

가능

1) 전기사업자

2) 도시가스사업자

3) 석탄가공업자

4) 집단에너지사업자

5) 연간 2만 석유환산톤 이상 에너지 사용하는 자

나. 국내외 에너지사정 변동으로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우려)시 에너지사용자나 공급자, 에너지사용기자재 소유자, 관리자에 다음 조정/명령 등 가능

- 지역별/주요 수급자별 에너지 할당
- 에너지공급설비 가동, 조업

- 에너지 비축/저장
- 에너지 도입/수출입, 위탁가공
- 에너지공급자 간 에너지 교환, 분배 사용
- 에너지 유통시설, 사용, 유통경로
- 에너지 배급
- 에너지 양도/양수 제한/금지
- 에너지사용시설과 에너지사용기자재에 사용할 에너지 지정, 사용 에너지 전환
- 위생 접객업소,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사용 제한
- 차량 등 에너지사용기자재 사용 제한/금지
- 에너지사용 시기/방법 제한
- 특정 지역 에너지사용 제한
- 이외 에너지수급 안정을 위한 사항

다. 상기 조치 시행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장, 지자체 장에 협조 요청 가능

- 관계 행정기관 장, 지자체장은 협조 요

라. 조치 한 사유 소멸시 지체없이 해제 요

4. 국가등과 공공기관은 법 목적에 따라 **에너지이용 효율화**, 온실가스 배출 감소 **조치** 요

가) 조치에 관해 위원회 심의 거침

나) 조치의 구체적 내용

a) 에너지절약,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 제도/시책 마련, 정비

- 홍보/교육

b) 건물/수송 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 온실가스배출 감축

5.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이하 **투자계획**)

가. 에너지공급자(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를 공급하는 자로서 에너지 수요관리투자 촉진을 위해 산업장관과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하는 자)는,

1) 에너지 생산/전환/수송/저장, 이용상 효율향상, 수요 절감, 온실가스배출 감축 등을